KOSHA GUIDE

C - 48 - 2022

6.3.5 비상시 조치사항

- (1) 운행중 이상현상 발생 및 정전 등의 긴급상태 발생시는 먼저 주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.
- (2) 비상사태 발생후 재운전시는 필요한 시운전(3~5 미터 정도의 상승·하강동작)을 실 시하여 각부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리프트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함부로 조작하거나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.
- (4) 리프트가 운행중 고장난 경우 정지위치에 따라 출구문 또는 운반구 내부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비상탈출구를 통해 안전하게 밖으로 탈출한다.
- (5) 고장수리는 반드시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.

6.3.6 유지 및 작동상태 점검기준

- (1) 유지관리 기준
 - (가)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.
 - (나) 방호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킨 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 - (다) 리프트의 조작을 운반구 밖에서 하는 경우 조작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누구나 조작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.
 - (라) 리프트의 유지관리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월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 다.
 - (마) 리프트의 적재하중, 정격속도, 기타 안전수칙 등을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마모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.
 - (바) 기타 리프트의 상태와 현장실정에 적합한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작동상태 점검기준

작동상태 점검을 위해서는 리프트의 정격하중을 실은 상태에서 상승·하강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작동상태가 정상이어야 한다.